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2 월 14 일

청 원 인

성 명 : 임 민 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임민재 외 29인

공동발의자::김창환,표진우,장재영,서대연,엄성현,김신우,박형국,남석원,김현민,강민주,박예진,박세린,이윤지,민보윤,박소현,이수진,현지혜,이윤주,최민정,김주하,최혜민,김태준,박형준,김민규,김도현,김시온,신경은,허민정,이창희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성명 : 임민재
건명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2월 14일

소개의견

.청원인 임민재 외 29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 복지 시설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신청합니다. 허가제는 아동 복지 시설 설치 전에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설에 와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 50조 4항의 추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문
제 5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받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아동복지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기준으로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인천일보가 조사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기사입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207곳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시설 및 소화, 피난시설, 식품·위생시설 관리상태 안전점검을 벌여 아동복지시설 5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시와 각 군·구는 적발된 시설들의 위반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조치 했으나 LPG와 누수현상 등에 대한 보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고제로 이루어진 아동복지시설 설치 때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2. 주요골자

아동복지법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 5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받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기준으로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